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 (제1판)

- ▶ 본 지침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등에 따른 「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(제1판)」('22.5.) 에 따름
- ▶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를 따름
- ▶ 본 지침은 **별도 통보 시까지** 적용

2022. 8.

교 육 부 (교원정책과)

Ⅰ 수업운영 방식별 복무관리

※「2022학년도 2학기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」('22.8.4.)에 따라 모든 학교는 '정상등교'를 실시하여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,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심각 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·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운영 가능

1. 등교수업 운영 시

- 가. 학교에 출근한 교원은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소독·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- 나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·지역의 감염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 가능
 - 개별 시차출퇴근 사용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법*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
 - * 나이스 출퇴근등록, 학교별 출퇴근 등록시스템 또는 수기대장 등

2. 원격수업 운영 시

- 가.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, 코로나19 감염상황 심각 시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
- 나. 지각, 조퇴, 외출, 출장 등 사유 발생 시 등교수업 운영 시와 동일하게 수업결손 예방 조치(보결교사 확보, NEIS 시간표 조정 등) 실시

Ⅱ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

| | 본인 | | • 격리·치료기간 동안 병가 처리가 원칙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
| 확진자 |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| | • 출근 또는 재택근무• (자가·공동격리 시) 재택근무 또는 공가 | | |
| | 학교(기관) 내 발생 | > | • (학교 권고에 따른 검사) 검사 및 결과 대기시간은 공가 • (학교 내 확산 우려 시) 재택근무 등 조치 가능 | | |
| 검사 | 학교(기관) 검사 권고 또는 자기검사 양성으로 추기검사 | > | ·검사 등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| | |
| 백신접종 | 근무지외 장소에서 접종 | • | ·접종 전·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| | |
| 45.52 | 이상반응 발생 | • | •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 시 병가 | | |

1.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

- 가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(이하 "코로나19 대응지침") 등에 따라 격리·치료 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)
- 나. 격리·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**'병가' 처리가 원칙** 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8조)
 - 해당연도 병가일수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격리기간 동안 '공가' 처리하되, 본인의 책임(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,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)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
- 다. 학교(기관)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교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

2. 동거인 또는 동거기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

- 가.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,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'출근' 또는 '재택근무' 실시 가능
- 나. 해당 교원이 자가·공동격리*되는 경우,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'재택근무' 또는 '공가' 처리
 - * 중증장애인 또는 영유아·아동(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) 등이 자가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격리 가능

3. 학교(기관)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

- 가.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8판) 및 방역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
 - 학교(기관)의 권고에 따른 검사 및 결과 대기시간은 '공가' 처리 가능
- 나.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'음성'인 경우 출근 가능하되, 임상 증상이 있거나 근무 지속 시 학교(기관) 내 확산 우려가 있으면 '**재택근무'** 등 조치 가능

4.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

- 가. ①학교(기관)이 교원에 대하여 검사를 권고 (유증상자인 경우,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)하거나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'양성'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, 검사 등에 직접 필요한 시간*에 대해서는 '공가' 처리 가능
 - * 이동, 검사대기 및 검사시간, PCR·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대기시간 등

5.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

- 가. 정부의「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」등에 따라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교원에 대해 **접종 전·후에 직접 필요한** 시간*만큼 '공가' 부여
 - *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기관으로 이동·복귀 시간,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,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(15~30분),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
- 나. 백신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*이 발생한 교원에 대해 '병가' 부여 ※ 〈붙임1〉 참고
 - *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
 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8조 제3항에도 불구,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'1일의 병가' 사용 가능
- 다. 자녀의 백신접종에 동행하는 경우,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가능

재택근무 시 복무관리

※ 학교(기관)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'재택근무' 원칙

1. 신청 · 승인

 Π

- 가. (실시 기간) 최소 1일 이상(시간 단위는 불가), 일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
- 나. (신청 시기)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,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하여 당일 24시까지 학교장 승인

2. 복무 관리

- 가. (출퇴근 관리)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하여 관리하며, 당일 근무종료 후 학교장에게 재택 근무 일일상황 보고
- 나. (근무시간)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
- 다. (근무지) 재택근무로 업무수행 중 사적 이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음
 - ※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(「국가공무원법」제58조)
- 라. (학교 출근) 재택근무 중 불가피하게 학교로 출근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출장지를 학교로 하여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

- 마. (휴가 사용) 재택근무일 중 휴가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가, 특별휴가 등 사용 가능
 - 재택근무 중 개인용무가 발생하여 외출해야 하거나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**외출(연가) 등 처리**
- 바. (품위 유지) 재택근무 중, 특히 원격수업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어야 함
 - ※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3조)
- 바. (초과근무) 긴급 업무 발생 시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 실시 가능
 - 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」에 따라 재택근무 시 시간외근무 수당 실적분 미지급(정액분은 지급 가능)이 원칙이나,
 -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'긴급 초과근무 명령'(서식 붙임2 참고)을 받아 근무시간 전·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」에도 불구하고,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

Ⅳ 기타 유형별 복무관리

- 1. 고위험 교원(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**의 경우** ※ 〈붙임3〉 참고
 - 가. 단위학교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,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 우선 배려
 - 나.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**임신검진휴가** 활용 가능
 - ※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(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) 한시적 미적용

2. 해외 입국자

- 가.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 사무실 출근 가능하며, 출근 전 신속항원 검사(개인용 전문가용) 실시 권고
- 나.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'재택근무' 원칙이며,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 귀국의 사유가 **공무이면** '공가' 처리, 공무 이외 개인 사유*인 경우는 '연가' 처리
 - * (예)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인 경우(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,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등)
- 다.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등을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
- 라. 공무원은 여행 등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

3. 기타 복무처리

- 가. (근무 중 귀가) 근무시간 중 귀가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,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에 수업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과 협의 후 근무지내 여비 부지급 출장 처리 등을 통해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 교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
- 나. **(동반휴직·유학휴직)** 「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」 (인사혁신처 예규, '20.7.15.)에 따라 **운영 유연화 유지**
- 다.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, 학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에게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(무급휴가 포함 10일) 등 가능
- 라. 코로나19 격리자는 '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착' (※ 붙임4) 등 관련 지침 준수
 -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'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'을 준용하여 준수

서류 제출 관련

1. 본인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 관련

- 가. 재택치료 등으로「의료법」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
 - ※ 병가 후 복귀 시 입원·격리 통지서, 감염확진 통보문자, 진단서 등 확인

2. 격리·치료 후 출근 시

- 가.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, 격리자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(복무)부서에 제출
 -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(예: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)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
 - 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, 주민등록등본, 예방접종증명서,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

Ⅵ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

- 가.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*에 따라 엄중 조치
 - * 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(비밀 엄수의 의무), 「형법」제127조(공무상 비밀의 누설)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4조(비밀누설의 금지) 등
- 나.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 관련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
- 다.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
- 라. 본 지침과 함께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관련 조치도 준수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
- 마.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인력 상황, 근무지역, 업무성격, 업무의 중요성·시급성, 교육과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·학교별 여건에 맞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















이럴 땐, 이렇게 하세요.

-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·통증이 있는 경우,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.
- 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.
- 접종 후 발열, 근육통 등으로 불편할 경우, 해열·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
- *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·진통제를 준비하고,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·진통제를 복용하세요.



이럴 땐,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.

-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, 통증,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
-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난 경우

<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>

-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,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
- 접종 후 6주 이내에 호흡곤란, 흉통, 지속적인 복부 통증, 팔·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
-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<mark>멍이나 출혈</mark>이 생긴 경우 등

<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>

• 가슴 통증·압박감·불편감, 호흡곤란이나 숨가쁨, 호흡시 통증,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,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



이럴땐, 119에신고 또는 <mark>급실</mark>을 방문하세요.

- 접종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
- 접종 후입술,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
- 접종후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

2021,10,19,

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(재택근무시)

※ 아래 양식은 변경 가능함

|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|---|---|
| < 1. 근무자 정보 > | | | | | | | | | | |
| 성명 | | | 서명 | () | 직위 또는 직급 | | | 연락처 | | |
| 초과근무 장소 | □ 자 □ 기 | | □ 관 | 사 | □ 지정된 재) | 택근무기 | 4 | | | |
| < 2. 긴급 재택 초과근무 정보 > | | | | | | | | | | |
| 긴급 업무내 | Q O | | | | | | | 초과근무 시간 | (|) |
| 긴급 추 사유 | 진 | | | | | | | | | |
| 위와 같이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허가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20 |) 년 | 월 | 일 | | | |
| ○○○○○ 학교장(인) | | | | | | | | | | |

※ 유의사항

- 1.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명령하여야 함
- 2. 긴급 재택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함
- 3. 사전 내부 결재(긴급 초과근무 상황 및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포함) 필요

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





대응지침 제9판 부록5 '고위험군 생활수칙'

임신부, 65세 이상 어르신, 만성질환자*는 코루나19에 더 취약합니다

* 만성질환자(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)







코로나19와의 장기전,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

2020.07.01.

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

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'자가격리'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.

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[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]

-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금지됩니다.
- 단, 설비의 긴급수리, 위급상황, 돌봄서비스,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.
-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.
-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,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.
-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.
 - ※ 불가피하게 화장실,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, 사용 후 소독(락스 등 가정용소독제)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.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 - 병·의원 방문, 코로나19 예방접종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(최초 외출에 한함)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
 -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
 - 외출시 도보,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
 - 확진자는 병·의원 방문, 의약품 구매·수령, 임종(의료기관 등 사망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 외의 외출 금지
-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.
- 응급상황* 발생 시(112 또는 119에 신고 시)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하니다.
 - * 응급상황 예시 : 중증질환 악화, 분만, 사고·재해 등
- 지진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.
 -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.
 -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.
 -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,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.
-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.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세요.

-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
-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.
 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
 -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 -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, 기침,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.
-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
 - 공동격리자,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(RAT)를 받아야 합니다.

[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]

-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?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.
-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
- 발열(37.5 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.
-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

| 코로나19 임상증상이 | 발생할 경우 먼저 | 관할 보건소(| 담당공무원)와 | 상의하시거나 | 질병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관리청 콜센터(국번없 | 이 🕿 1339)로 알려 | 주십시오. | | | |
| ※ 담당보건소: | 담당자 | : | 긴급연락치 | H: | |
| | | | | | |